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변경 사유**

- (1)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(2)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4. 27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신설>	<u>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5. 3. 31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	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 3. 16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: 퇴직연금제도의 세제	③ 세액공제(2014. 1. 1. 부터):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가입자 추가부담금(DC, 기업형 IRP)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	③ 세액공제(2015. 1. 1. 부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

	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<u>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u>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 3. 16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 3. 16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 3. 16. 기준</u>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법 개정사항 반영	<u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	<u>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	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	<u>③회계감사</u>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